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8. 17 선고 2017가합561(본소), 2018가합1132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문수생, 신재형, 김익범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변론 종결2021. 6. 15.

판결 선고2021. 8.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소중 499,904,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5분의 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5분의 1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89,748,955원 및 그 중 509,999,7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179,749,255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6. 2. 11. 피고와 진주시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착공년월일 : 2016년 02월 11.일
- 준공예정년월일 : 2017년 02월 10.일
- 계약금액 : 일금사십팔억칠천구백육십만원정 (₩4,879,6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지체상금율 : 0.1 %

나. 원고와 피고의 준공정산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7. 9. 18.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준공정산 합의서 및 준공금정산서(이하 준공정산 합의서 및 준공금 정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준공정산 합의서

1. 공사대금 정산

원고와 피고는 2017년 9월 17.일 합의한 준공금 정산서에 따라 공사비를 확정한다.

2. 하자보수의 건

원고가 지적한 하자보수 건은 합의서 작성 후 1개월 내 완료한다.

3. 건물 준공의 건(준공정산합의서 서명 후)

준공서류 제출을 위한 미시공 내역(감리자 요구사항)

(1) 간이침전소 공사 - 불필요시 시공사가 감독청에 직접 확인 및 증빙서류를 받는다.

(2) 방화구역 공사(화장실, 복도 수평배관부위) - 시공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선 제출 후 시공

(3) 준공에 필요한 공사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적극 협조한다.

2017. 9. 18.(월요일)까지 감독청에 준공서류 접수하는데, 문제없도록 위 작업을 완료한다.

4. 공사대금 지급의 건

원고는 사용승인 후, 소유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1항에 의해 합의된 정산합의금액(기 지급분 기성금 제외금액)을 피고 및 직불 협력업체에 지급한다.(지급방법은 은행대출 대출은행에서 피고 및 직불업체의 기성지급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4. 특약

원고와 피고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이해관계인 포함)

공사대금 수령시 상호간에 분쟁중인 소송은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준공금 정산서

계약금액 : 4,879,600,000 (V.A.T포함)

계약당시 감액약속분: 61,000,000 (V.A.T포함)

레미콘 대금 정산분: 252,873,000 (V.A.T포함)

계 : 4,565,727,000 (V.A.T포함)

기성령액 : 2,772,479,000 (V.A.T포함)

공사비잔여금: 1,793,248,000 (V.A.T포함)

"갑"과"을"의 합의유보금: 150,000,000 (V.A.T포함)

1,643,248,000 (V.A.T포함)

상기 유보금 150,000,000원은 소방, 창호, 석공사시공분에 물량을 확인 후 생산하여 상호결산 하기로 한다.(결산 기준일은 2017년 10월 11.일 부터 2017년 10월 29.일 까지로함.)

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대지 가압류 및 해제

피고는 2017. 9. 1.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잔금채권(1,854,248,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대지(진주시 C 대 868.2m²)에 관한 가압류 신청(이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이 법원 2017카단3960호), 같은 달 1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관한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7. 9. 27.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2017. 9. 28. 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및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진주시는 2017. 9. 27. 원고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9. 29.까지 피고 및 하도급업체에 합계 4,604,154,6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소 제기 등

원고는 2017. 11. 1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523호로 '피고는 당초 예정된 준공일인 2017. 2. 10.보다 229일 늦은 2017. 9.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지연된 15일을 제외한 214일간의 지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1,166,664,2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원고와 피고가 상호 양보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새로이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분쟁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부제소합의 및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7. 9. 원심과 같이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나13427호], 2020. 7.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4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의 체결경위 및 이 사건 합의서 문언상 하자보수의무는 정산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 때문에 피고 역시 이 사건 합의 이후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행동하였으며, 원고 또한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고의 하자보수의무를 전부 면제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러한 것은 거래관행 및 경험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합의의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23호증의 11, 13, 15, 제24호증의 4, 6, 제39호증, 을 제7, 16,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D은 2017. 8. 2.경 준공검사를 위하여 원고의 기술이사인 E에게 준공계 등을 가지고 갔었으나 E은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을 제16호증),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당 현장의 사용검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마감 점검을 한 결과 미시공 부분과 보완시공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므로 사용검사 신청 전에 이를 먼저 마무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갑 제23호증의 11).

(나)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현재 마감공사 미 시공부위 및 기 시공된 부위에 대하여 보완 및 재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마감공사 보완 및 재시공 리스트는 19개 항목에 달할 정도로 많았고 내용도 구체적이었다(갑 제23호증의 13).

(다)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아직 미시공된 부분이나 보완 시공하여야 할 곳은 협력업체를 독려하여 마감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7. 9. 4.에도 피고에게 배수 설비의 침전조 재시공을 독촉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갑 제23호증의 15, 갑 제24호증의 6).

(라) 피고 대표이사 F는 원고 대표이사 G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H에게, 2017. 7. 24. '공사 끝나도 2년간은 하자 보수를 해줄 것이니 기분 좋게 마무리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갑 제39호증), 2017. 8. 23. '내일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다.

(마) H가 F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7. 9. 1.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관한 인용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가압류 신청 취하를 위해 피고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F는 2017. 9.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초안(이하 '이 사건 피고 합의안'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H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을 제7호증).

준공정산 합의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3. 준공정산금액 : 1,643,248,000원(V.A.T.포함)
4. 준공정산서상 유보금액 150,000,000원은 준공정산서 내용에 준한다.
5. 공사기간 : 2016. 2. 11.부터 본 공사 준공검사일까지로 한다.
6. 하자보수책임기간 : 각 공정 법적 하자 보수 기간을 적용한다.

상기와 같이 준공정산합의 내용대로 상호 이행하고, 이후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및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사)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계속된 공사 지연으로 원고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2017. 9. 18.까지는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액을 정밀히 산정하여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갑 제24호증의 4).

(아) H는 위 공문 발송 다음 날인 2017. 9. 12. I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J의 도움을 받아 원고 측 합의서 초안(이하 '이 사건 원고 합의안'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안)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각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1. 건물준공의 건

준공서류 제출을 위한 미시공 내역(감리자 요구사항)

① 간이침전소 공사, ② 방화구역 공사, ③ 준공에 필요한 공사 및 관련 서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한다.

2017. 9. 13.까지 감독청에 준공서류 접수하는 데에 문제없도록 위 작업을 완료한다.

2. 공사대금 지급의 건

건축주는 사용승인 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대출을 받아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시공사 및 협력업체에 지급한다.

3. 공사대금 정산 및 미시공·하자보수공사의 건

시공사는 위 2항에 의해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별지 내역서와 같이 작성 후, 미시공, 하자보수공사를(협의기간 개월) 내 완료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4. 특약

시공사 및 건축주는 위 3항과 관련한 민, 형사상 법적 분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한다. 단, 3항의 합의된 기한 내에 별지 내역서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거나 정산되지 않는 경우 4항의 특약은 무효로 한다.

(자) H, F와 J는 2017. 9. 17.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다음 날인 2017. 9. 18. H, F, J, K(피고의 관리이사), L(피고의 업무부장)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하자보수 등에 관한 다툼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부제소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는 하자보수, 건물 준공 관련 내용,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한 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체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감 점검을 한 결과 미시공 부분과 보완시공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하여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보완시공을 요청하는 항목이 매우 구체적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 전에 이미 '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체결 전 각자의 합의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 합의안에는 '하자보수책임기간 : 각 공정 법적 하자 보수 기간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원고 합의안은 피고 합의안보다 더 나아가 '하자보수공사의 건과 관련한 민, 형사상 법적 분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황에서 하자보수의 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직후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2017. 9. 27.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기한 가압류 결정이 해제되어 그 다음 날인 2017. 9. 28. 그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M조합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았다.

(마)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의 부제소특약의 적용대상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상당한 금액의 하자보수 청구를 유보한 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추후 원고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위 정산금만 받고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쌍방이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취하였던 구체적인 조치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갑 제42호증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체결 이후인 2018. 3. 28.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도 당연히 있음을 전제로 행동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3. 20. 신규하자 보수를 요청받고, 2018. 3. 28. 갑 제42호증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원고에게 보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갑 제42호증 공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귀사(원고)와 준공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귀사(원고)가 최종적으로 요구한 하자보수작업에 대하여 당사(피고)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가 공문에서 '이후 귀사(원고)의 추가적인 요청이 없었으며, 또한 금번 하자 요청 건에 대하여서는 2018년 3월 28.일 ~ 31일까지 현장 확인 후 향후 처리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며'라고 기재한 것만을 가지고 이 사건 합의에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방, 창호, 석공사의 정산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총액계약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상기 유보금 150,000,000원은 소방, 창호, 석공사시공분에 물량을 확인 후 정산하여 상호 결산하기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두어 소방공사, 창호공사, 석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경우 물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금액과 실제 공사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 금액은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에 명시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의미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약정된 물량이 시공되었는지 만 확인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사금액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유보금 150,000,000원은 공사비잔여금 1,793,248,000원의 일부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제외한 1,643,248,000원만 지급하였다. 즉 150,000,000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물량 확인 전까지 지급이 일부 유예되어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실제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보다 적은 공사대금만을 수령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물량이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입되었는지 확인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유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물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유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내역과 비교하여 실제 공사금액이 줄어들었을 경우 반환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합의서 중 준공금 정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비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잔여금을 기재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유보금 역시 물량만 확인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한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입된 물량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데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는 마당에 추가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조항을 두어 이 사건 각 공사의 경우 시공물량을 확인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유보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7호증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이 사건 각 공사금액의 합계는 1,264,845,503원(= 소방공사 222,320,803원 + 창호공사 532,276,000원 + 석공사 510,248,700원)이고, 감정인 N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인은 이 사건 각 공사에 실제 투입된

공사금액의 합계를 1,077,01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2)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실제 투입한 공사금액의 합계는 1,077,0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의미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약정된 물량이 시공되었는지만 확인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물량이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입된 경우에만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금액과 공사가 완료된 현재 상태에 투입된 실제 공사금액 사이에 187,835,503원의 차이가 발생한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물량이 전부 투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지급이 유보된 150,000,000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CIP 설치공사 등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433,455,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반소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499,904,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제소 합의를 위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현구

판사김정은

판사김현숙